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9. 00. 공포, 2023. 1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국민취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을 “국민취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국민취업지원1과, 국민취업지원2과”를 “국민취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과명란 중 “국민취업지원1과, 국민취업지원2과”를 “국민취업지원과”로 한다.

별표 6의2를 삭제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직	정원	평가기간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1)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 제37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와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국민취업지원2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② ----- ----- ----- ----- ----- ----- ----- ----- ----- ----- ----- ----- ----- ----- ----- ----- ----- <u>국민취업지원과장</u> ----- ----- ----- -----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③ (생략)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 국민취업지원1과장 및 국민취업지원2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⑤ ~ ⑬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37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민
취업지원과장-----

-----.

⑤ ~ ⑬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7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u>	② ----- ----- ----- ----- ----- <u>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u>
---	---